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11호

「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5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물품,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최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의 고충해소 및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, 적용대상기관(안 제1조 ~ 제4조)
- 나. 구매촉진, 우선구매대상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(안 제5조 ~ 제7조)
- 다. 업체정보의 제공 및 포상(안 제8조 ~ 제9조)
- 라.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및 협의회 기능(안 제10조 ~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21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argentina111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